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Korean*

# CW-1 비자: 북마리아나제도에만 해당되는 임시 노동자

북마리아나제도에만 해당되는 임시 노동자(CW) 비자 유형은 북마리아나제도(CNMI) 내의 고용주들이 다른 비이민 노동자 유형으로 일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비이민)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한 임시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CW 유형은 이전의 북마리아나제도 외국인 노동자 허가 시스템으로부터 미국 이민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CW 비이민 유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칭됩니다:

- CW-1: 북마리아나제도에만 해당되는 임시 노동자
- CW-2: 북마리아나제도에만 해당되는 임시 노동자의 부양가족

## 일반 자격 요건

### 고용주

노동자들이 CW 비자 지위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하려면, 고용주들은:

- 합법적인 사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모든 가능한 미국 노동자들을 그 직책을 위해 고려해야 합니다
- 북마리아나제도 내의 고용주의 사업의 성격에 맞는 고용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 임시 노동자 고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연방 및 북마리아나제도의 모든 고용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로서는 비차별, 직업 안전 및 최저임금 요건들이 포함됩니다

- 노동자가 승인된 입국 기간 종료 전에 어떤 이유로든 타의로 해고된 경우 노동자의 최종 외국 거주처로 돌아가는 적절한 교통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사업은 이익을 위해 서비스나 상품을 생산하는 실제 활동하고 운영하는 상업 또는 사업 업무나 또는 정부, 자선단체 또는 기타 법적으로 인정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동 사업은 북마리아나제도 내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매춘, 인신매매 또는 연방법이나 북마리아나제도법에 위배되는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은 합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전환기 중에 CW-1 비이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다음 법에 따라 다른 비이민 취업 지위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미국 이민법
- 거주자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한 것으로 지정된 직업 부문에서 일하기 위해 북마리아나제도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며
- 북마리아나제도에서 사업을 하는 합법적인 고용주가 제출한 청원의 수혜자이며
- 북마리아나제도 이외의 미국 내에 체류하지 않으며
- 북마리아나제도 내에 체류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북마리아나제도에 체류하며
- 달리 미국에 입국 가능하거나 입국 불허 이유에 대한 필요한 면제를 허락 받은 경우

## 신청 절차: CW-1 및 CW-2 지위

### 고용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 1	조치 2
연방 비이민 지위를 가지고(예를 들면, F-1이나 H-1B) 북마리아나제도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한명이나 그 이상의 노동자들을 위해 청원하는	I-129CW 양식을 \$325의 신청료와 함께 제출하고	수혜자 당 \$150의 의무적 “북마리아나제도 교육 재정지원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우		
북마리아나제도 허가를 가지고 북마리아나제도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거나 미국이민국이나 세관국경보호국(CBP)으로부터 일시 입국 허가를 받은 한명이나 그 이상의 노동자들을 위해 청원하는 경우	I-129CW 양식을 \$325의 신청료와 함께 제출하고	수혜자 당 \$150의 의무적 “북마리아나제도 교육 재정지원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북마리아나제도 내의 지위 허락을 요청하는 경우 고용주나 노동자가 \$85의 생체 인식 수수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영사 처리를 요청하는 한명이나 그 이상의 노동자들을 위해 청원하는 경우	I-129CW 양식을 \$325의 신청료와 함께 제출하고	수혜자 당 \$150의 의무적 “북마리아나제도 교육 재정지원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생체 인식 수수료는 제출하지 마십시오. 노동자가 해외에서 자신의 비자를 신청할 때 국부부에서 생체 인식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 노동자를 위해 CW 지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I-129CW 양식을 \$325의 신청료와 함께 제출하고	노동자 당 \$150의 의무적 “북마리아나제도 교육 재정지원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동자들

### 북마리아나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살아오고 일해온 외국인 노동자

1. CW 지위를 받으려면 귀하의 고용주가 다음 서류들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I-129CW 양식인 ‘북마리아나제도에만 해당되는 비이민 임시 노동자를 위한 청원’와 해당 수수료
  - 의무적인 \$150의 교육 수수료
  - 귀하, 귀하의 고용주 및 일자리에 관해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며 자격 기준을 충족시킴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귀하가 북마리아나제도 허가나 미국이민국나 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 받은 일시입국 허가를 가지고 북마리아나제도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귀하가 해외가 아니라 북마리아나제도 내에서 CW-1 지위 승인을 요청하면  
청원서와 함께 생체인식 수수료도 포함해야 합니다.

2. 북마리아나제도 내에서 직접적인 **지위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대부분 고용주가 I-129CW 양식을 제출한 후에 미국이민국이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귀하가 다음 장소로 가야한다고 통보합니다: 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을 위해 사이판의 TSL 플라자에 있는 미국이민국 신청 지원 센터. 이로 인해 국토안보부가 필요한 보안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I-129CW 양식이 승인되면, 미국이민국은 승인 통지서를 고용주에게 우송하며 고용주는 이 서류의 사본을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승인 통지서는 귀하가 북마리아나제도 내에서 CW-1 지위를 허가받았는지(첨부된 I-94 양식 ‘도착-출발 기록’가 입증) 여부 또는 귀하의 CW-1 비자의 비자 처리를 위해 해외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진해해야 하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북마리아나제도 내에서 살고있으며 취업을 구하는 외국인 노동자**

1. 귀하의 고용주가 다음 서류들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I-129CW 양식인 ‘북마리아나제도에만 해당되는 비이민 임시 노동자를 위한 청원’와 해당 수수료
  - 의무적인 \$150의 교육 수수료
  - 귀하, 귀하의 고용주 및 일자리에 관해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며 자격 기준을 충족시킴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2. 청원이 승인되면, 미국이민국은 CW-1 유형 청원이 승인되었음을 표시하는 승인 통지서를 고용주에게 우송합니다. 귀하의 고용주는 승인 통지서 원본을 귀하의 해외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3. 귀하가 승인 통지서를 받은 후, 귀하는 인근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비이민 비자 인터뷰를 위한 약속을 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있는 수혜자**

CW-2 지위 허가를 구하는 북마리아나제도 내의 부양가족들은 일단 고용주가 CW-1 청원서를 제출하면 CW-1 당사자를 위한 고용주의 I-129CW 청원과 동시에 I-539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들이 CW-1 청원이 승인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북마리아나제도 내에서 CW-2 지위 허가 대상이 되려면 I-539 양식 제출 당시에 북마리아나제도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합니다. 이것은 귀하의 부양가족이 CW-2 지위 신청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I-129CW가 승인되기 전에 I-539를 제출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CW-2 지위는 취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조치 2	그러면
귀하는 CW-1 비자를 가지고 북마리아나제도에 입국함으로써 또는 I-94가 첨부된 승인 통지서를 받은 후에 CW-1 지위를 획득하며,	귀하의 부양가족들이(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 북마리아나제도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그들은 다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서, I-539 양식</li> <li>• 제출료</li> <li>• 생체인식 서비스 수수료</li> <li>• 귀하의 CW-1 유형으로의 북마리아나제도 입국에 대한 서류 I-539 양식이 승인되면, 미국이민국은 승인된 I-539 양식의 증거자료로 I-94와 함께 승인 통지서를 귀하의 부양가족에게 보낼 것입니다.</li> </ul>
귀하는 CW-1 비자를 가지고 북마리아나제도에 입국함으로써 또는 I-94가 첨부된 승인 통지서를 받은 후에 CW-1 지위를 획득하며,	귀하의 부양가족들이(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 외국에 있으며,	그들은 CW-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무부는 <b>비자 신청</b> 에 대한 별도의 신청서와 수수료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국 주재 미국	귀하의	그들도 동시에 CW-2 비자를 신청할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귀하의 CW-1 지위에 대한 영사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부양가족들이(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 외국에 있으며,	수 있습니다. 미국무부는 비자 신청에 대한 별도의 신청서와 수수료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	--

## 체류 기간

CW 지위는 1년 동안 유효합니다 귀하는 북마리아나제도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CW 지위를 위해 재등록하거나 다른 이민국적법 비이민 또는 이민 지위를 받아야 합니다.

## 고용 종료

CW 비이민 지위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는 해당 CW 지위와 관련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반이 오직 고용 종료에 의해서만 초래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가 새로 취직하고 고용주가 그를 대신하여 경솔하지 않은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 노동자는 자신의 지위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이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는 CW 지위의 다른 조건을 위반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북마리아나제도에 합법적으로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새 고용주가 본 30일 기간 종료 전에 그를 위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새 고용주가 청원서를 제출한 후에만 새 고용주에게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 청원서가 30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 노동자는 북마리아나제도를 떠나야 하며 그 노동자는 CW-1 고용 종료 일부로 지위가 박탈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0일 기간 후에 그 노동자를 위해 청원서가 제출된 경우 청원서가

승인되고 북마리아나제도 외의 영사관에서 CW 비자가 발급된 후이나 외국인 노동자는 돌아와서 북마리아나제도 내의 새로운 취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여행

귀하가 CW 지위를 받으면 북마리아나제도를 떠날 수 있지만 북마리아나제도에 재입국하려면 적절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북마리아나제도에 있는 동안 CW-1 또는 CW-2 지위를 받은 경우, 귀하는 CW 지위 서류로서 I-94 양식 ‘도착-출발 기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I-94 양식만으로는 북마리아나제도 재입국을 위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입국을 신청하기 위해 북마리아나제도로 돌아오기 전에 해외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CW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무부는 비자 신청에 대한 별도의 신청서와 수수료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마리아나제도 외 여행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국무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CW 지위 소지자로서 귀하는 괌 공항을 경유하여 필리핀과 북마리아나제도 간을 여행하는 필리핀 국민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다른 지역으로 여행할 수 없습니다.